

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-410호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6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제품을 용도변경 하려면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나, 정밀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위반행위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취소 기준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매년 1회 이상 현지 위생점검을 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

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수입식품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

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

○ 전화 : 043-719-2168 팩스 : 043-719-2150

○ 이메일 : namkung01@korea.kr

※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) 『법령·자료 - 입법/행정예고』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제3호가목2) 중 “별표 9”를 “별표 9 제2호다목1)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하거나 같은 표”로 한다.

제35조제2항제6호 중 “이후 연매출액”을 “매출액”으로, “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”을 “2017년 6월 1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다음다음 해 6월 1일”을 “다음 해 12월 1일”로 한다.

별표 10 제2호나목 중 “다시”를 “5년 이내에 다시”로 한다.

별표 13 I 제9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 해당 위반사항이 별표 1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등록취소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로서, 해당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는 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

- 1) 매년 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
- 2)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
- 3)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수입업소가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적합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

별지 제27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가목2) 중 “별표 9”를 “별표 9 제2호가목 1)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하거나 같은 표”로 한다.

별표 13 Ⅱ. 개별기준의 제3호가목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6) 식품유형 또는 제품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		시정명령	영업정지 5일	영업정지 10일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13 Ⅱ. 개별기준의 제3호가목4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) 식품유형 또는 제품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		시정명령	영업정지 3일	영업정지 10일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8조(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) ① (생 략)	제28조(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		
3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.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, 식품전문 시험·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·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·검사성적서. 다만,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.	3. ----- 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
1) (생 략)	1) (현행과 같음)			
2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	2) -----			

하는 중점검사항목(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한다)에 대해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

나. (생략)

4. (생략)

③ · ④ (생략)

제35조(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
식품등) ① (생 략)

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“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”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등을 수입·판매하는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하며, 이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5
년 이후 연매출액이 10억원 이상
이 되는 영업자: 해당 연매출액
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

----- 별표 9 제2호다목1)
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아 적
합하거나 같은 표 --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4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
식품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_____
매출액 _____

----- 2017년 6월 1일

<u>다음 해 6월 1일</u> 7.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 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 이 되는 영업자: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<u>다음</u> <u>다음 해 6월 1일</u> 8. ~ 15. (생 략) ③ (생 략)	7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</u> <u>해 12월 1일</u> 8. ~ 1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수입식품정책과	
연 락 처	043-719-2168